

2021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2. 3. 4)

본 공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3월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광 수 (서명)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5
2. 이사회	10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1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58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74
6. 감사위원회	81
7. 리스크관리위원회	93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100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100

제2절 보수체제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102
2. 보수체제	109

<첨 부>

1. 정관	118
2. 지배구조내부규범	135
3. 이사회규정	147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156
5. 감사위원회규정	160
6.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168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NH저축은행”)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NH저축은행은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와 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21년말 현재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3인, 비상임이사 2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견제장치가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지배구조의 취약점으로서 지배구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2021년 말 현재 이사회는 금융분야 2명, 경제분야 2명, 법률분야 1명, 경영분야 1명)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2021년 이사회 12회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기본정보 및 경영현황, 정관·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주요 내규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이사회(위원회)의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 처리상황 또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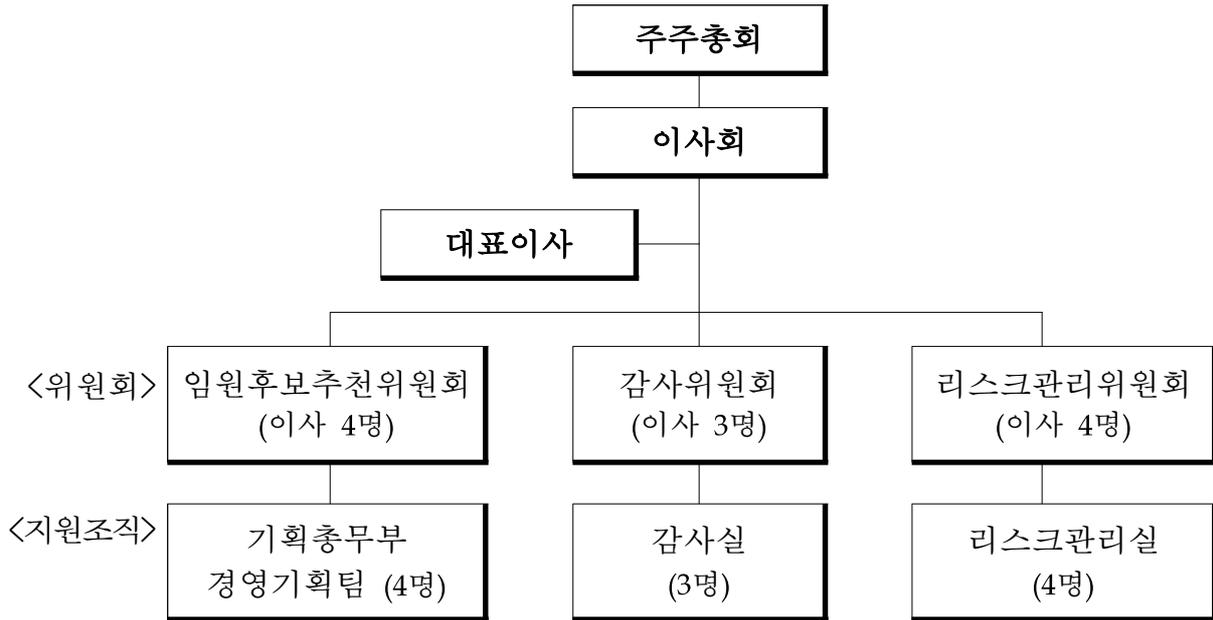
(NH저축은행 : www.nhsavingsbank.co.kr, 저축은행중앙회 : www.fsb.or.kr)

NH저축은행은 관련 법규 등에 기반하여 지배구조 원칙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 매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021.12.31. 기준)



주) 보수위원회 : 감사위원회로 대체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구분	총인원	비고
이사회	6명	대표이사(1명), 사외이사(3명), 비상임이사(2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	4명	사외이사(3명), 비상임이사(1명)
감사위원회	3명	사외이사(3명)
리스크관리위원회	4명	사외이사(3명), 비상임이사(1명)

2) 지배구조의 특징

NH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 수는 전체 6명의 이사 중 3명, 비율은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 수는 전체 6명의 이사 중 2명, 비율은 33%입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는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NH저축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3개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NH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를 심사·선정하여 추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NH저축은행의 재산과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집행,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사후조치 및 개선방안 제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평가를 통한 NH저축은행의 가치 제고, 외부감사인 선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정책 및 전략을 수립·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H저축은행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발하여 검증한 뒤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사외이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 외부 자문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한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며, 후보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검증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관리활동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021.12.31. 기준)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 구성원수)	의장 (이름/상임·사외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업무집행 감독	3명/6명	의장 (구본민/사외)	정관 § 29 지배구조내부규범 § 3 이사회규정 § 9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3명/4명	위원장 (구본민/사외)	지배구조내부규범 § 10 이사회규정 § 14
감사위원회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사,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및 경영 성과를 평가·개선	3명/3명	위원장 (한상국/사외)	지배구조내부규범 § 11 이사회규정 § 14
리스크관리 위원회	경영목표와 사업전략 등을 고려한 리스크관리정책 및 전략 수립·승인	3명/4명	위원장 (함병석/사외)	지배구조내부규범 § 12 이사회규정 § 14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3. 이사회규정
- 첨부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 첨부5. 감사위원회규정
- 첨부6.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NH저축은행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한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NH저축은행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와 관련된 사항, 경영목표의 수립, 예산·결산 등과 같은 경영일반에 관련된 사항,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자본조달 및 자본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하거나,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을 보고 받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NH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 (지배구조법 § 15①1, 정관 § 29①4).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경영목표·전략은 2021년 9월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2021년 11월 이사 사전 간담회(사전 설명)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021년 11월 29일 개최된 2021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에서 2022년도 경영목표·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2022년 경영목표 · 전략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경영계획 승인내용 요약]

〈 경영목표 〉

지속 혁신으로 「디지털저축은행」 가치 창출

[비전 “초우량 디지털저축은행” 달성 추진]

〈 핵심추진과제 〉

① 균형 성장을 통한 수익 기반 확충

- ◇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수익성 강화
- ◇ 플랫폼 및 범농협 시너지 확대

② 디지털 금융 혁신 가속화

- ◇ 디지털 기반 사업성장 배가 추진
- ◇ 디지털 혁신을 위한 상시 업그레이드 시스템 구축

③ 리스크 및 자산관리 체계화

- ◇ 리스크 관리 고도화로 지속 성장기반 확충
- ◇ 부실채권 관리 강화로 자산의 건전성 확보

④ 사회적 가치 중심 조직 구현

- ◇ ESG 경영 실천 내재화 및 조직 경쟁력 강화
- ◇ 내부통제 고도화로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나) 정관 변경

NH저축은행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변경 안을 심의 · 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 15①2, 이사회규정 § 9①1의2)

2021년 정관 변경 안과 관련하여 이사회 심의 · 의결사항 없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NH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 안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 15①3, 정관 § 29①3,5) 이 경우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심의·의결하며,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예산은 2022년도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2021년 11월 개최된 제11차 임시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도 총예산(비용)은 351억원으로 전년대비 64억원 증가된 금액이며, 증가한 세부내역은 인건비 18억원, 세금과공과 및 관리성경비 등 46억원입니다.

2020년 결산 안에 대해 경영진이 마련한 초안을 2021년 2월에 개최된 제2차 임시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21년 2월에 개최된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결산회계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제3차 임시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2021년 3월 제4차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20년 결산 결과 총자산은 전년대비 3,841억원 증가한 18,353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2억원 증가한 207억원이며, 2020년 배당금액은 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NH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 본점의 이전 및 폐지 등 조직의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 15①4, 이사회규정 § 9①2의2, 이사회규정 § 9①17).

이에 따라 2022년도 조직 개편 안은 2021년 11월 개최된 제11차 임시이사회에서 2022년도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의결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추진부」 소속을 경영지원본부로 변경하였고,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NH저축은행 이사회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규정(2011년 제정)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통제함으로써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내부통제규정 § 6①)

또한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임원,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내부통제규정 § 7②)

NH저축은행은 내부통제 준수여부 점검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지배구조법 § 15①5, 정관 § 25조의5①, 내부통제규정 § 8), 현 준법감시인(민재식)은 2020년 9월 제9차 임시이사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2021년 매분기 내부감사장치의 가동현황을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NH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2019년 7월 제정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6조에서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등을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개최된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험성향 설정을 포함한 리스크 유형별 위험자본 관리계획을 수립·의결 하였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NH저축은행은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 15①6, 이사회규정 § 9①9의2).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는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

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배구조의 정책이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매년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토록 함으로써 이사회내 감독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였고, 같은 날 동 이사회에서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안을 의결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NH저축은행은 2017년 1월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및 상시적인 후보군 관리 안을 의결하여 경영승계 계획 수립,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 등을 최초로 마련하였으며, 2021년 12월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을 보고 함으로써 건전한 지배구조 원칙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

NH저축은행 이사회는 대주주 · 임원과의 거래 등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심의 · 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 15①7, 이사회규정 § 9①9의3).

또한, 대주주 · 임원과의 주요거래에 관하여 사전에 이사회에 알리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상법 § 398 및 이사회규정 § 12②), 이사회 결의에 관여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이사회규정 § 12④) 이해상충행위 관리 · 감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NH저축은행 이사회 총원 수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3명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는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최소원수를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자산 규모와 수행 업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할 때 구성원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말 현재 이사회는 6명의 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3명, 비상임이사 2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김진영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6월에 개최된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최광수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말 사외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이 임기 만료됨에 따라, 2021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상국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구본민 사외이사, 김응기 비상임이사 후임으로 이항용 사외이사, 민병익 비상임이사를 선임하였으며, 황종연 비상임이사는 임기만료되었습니다.

정관 제26조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저축은행에서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할 수 없고, 저축은행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하여 9년이상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4조(이사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적극적 자격요건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4조(이사의 자격요건)

-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정관 제25조의3 (사외이사 자격기준)

- 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021년 말 현재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전문분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금융분야 1명, 경제분야 2명, 법률분야 1명, 경영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30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2021년 1월 개최된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법률분야 전문가(現 법무법인 유한 강남 구성 변호사)인 구본민 사외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1년의 임기로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구성원

가) 이사회 의장 구분민

사외이사인 구분민 이사는 이사회 의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9년 1월 28일 최초 선임되어 임기 만료일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경력은 최근 순으로 법무법인 유한 강남 구성 변호사<2018년 7월 ~ 現>를 겸직 중이며, 제13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2015년 5월 ~ 2018년 5월>, 법무법인 유한강남 대표변호사<2013년 5월 ~ 2015년 5월>,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2009년 2월 ~ 2013년 5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2008년 3월 ~ 2009년 1월>을 역임하였습니다.

나) 대표이사 최광수

상임이사인 최광수 대표이사는 2020년 6월 27일 최초 선임되었고 임기만료일은 2022년 6월 26일입니다. 경력은 최근 순으로 NH저축은행 대표이사<2020년 6월 ~ 現>, 농협자산관리 전무<2018년 2월 ~ 2019년 1월>,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본부장<2016년 1월 ~ 2017년 12월>, 농협은행 신탁부 부장<2015년 1월 ~ 2015년 12월>,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지부장<2014년 2월 ~ 2014년 12월>를 역임하였습니다.

다) 비상임이사 김응기

비상임이사인 김응기 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최초 선임되어 임기만료일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경력은 충남 보령 웅천농협 조합장<1994년 2월 ~ 2015년 3월>을 역임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한상국

사외이사인 한상국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2020년 1월 1일 최초 선임되어 임기만료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경력은 최근 순으로 (주)한페이시스 경영자문역<2018년 4월 ~ 現>을 겸직 중이며, (주)한페이시스 대표이사<2010년 3월 ~ 2018년 3월>, (주)한페이시스 감사실 팀장<2009년 6월 ~ 2010년 3월>을 역임하였습니다.

다) 비상임이사 황종연

비상임이사인 황종연 이사는 2020년 1월 1일 최초 선임되어 임기만료일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경력은 최근 순으로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장<2020년 1월 ~ 現>을 겸직 중이며, 농협은행 충주시 지부장<2019년 1월 ~ 2019년 12월>, 농협은행 남서초 지점장<2016년 1월 ~ 2018년 12월>을 역임하였습니다.

바) 사외이사 함병석

사외이사인 함병석 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2021년 1월 1일 최초 선임되어 임기만료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경력은 최근 순으로 (주)진코퍼레이션 경영자문역<2020년 10월 ~ 現>을 겸직 중이며, (주)농협정보시스템 대표이사<2013년 2월 ~ 2016년 1월>, 농협중앙회 전략기획본부 본부장<2012년 3월 ~ 2012년 12월>,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본부 본부장<2011년 1월 ~ 2012년 3월>을 역임하였습니다.

3) 요약

(2021.12.31. 기준)

성명	상임/ 사외/ 비상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¹⁾	담당 위원회
구본민	사외	이사회회장 임추위원장 감사위원 리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법인 강남 구성 변호사(現) · 제13대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19.1.28.	'21.12.31.	35 개월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최광수	상임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자산관리 전무 ·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본부장 	'20.6.27.	'22.6.26.	18 개월	-
김응기	비상임	임추위원 리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보령 용천농협조합장 	'19.1.1.	'21.12.31.	36 개월	임추위 리관위
한상국	사외	감사위원장 임추위원 리관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페이시스 경영자문역(現) · (주)한페이시스 대표이사 	'20.1.1.	'22.12.31.	24 개월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황종연	비상임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장(現) · 농협은행 충주시 지부장 	'20.1.1.	'21.12.31.	24 개월	-
함병석	사외	리관위원장 임추위원 감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진코퍼레이션 경영자문역(現) · (주)농협정보시스템 대표이사 	'21.1.1.	'22.12.31.	12 개월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비고

1) 재임기간은 최초 선임일부터 현재 기준일(2021.12.31.)까지

2) 임추위(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감사위원회), 리관위(리스크관리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1년에는 총 12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100%로 부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전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안전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통해 2021년 총 49건의 안전(의결 21건, 보고 28건)이 모두 가결 및 접수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¹⁾

- 개최일시 : 2021.01.27.(수), 10:50
- 안전 통지일 : 2021.01.20.(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1.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제1호 안전 2020년 4분기 이사회 의결에 대한 업무집행상황	특이사항 없음						접수
나. 제2호 안전 2020년 4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결과	특이사항 없음						접수
다. 제3호 안전 2020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라. 제4호 안전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마. 제5호 안전 2020년 4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특이사항 없음						접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어서)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¹⁾ 이사회 의장 선출(안)	제한 ²⁾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호 안건 ³⁾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구본민(사외이사) 임시의장이 회의를 주재
- 2) 이사 전원의 동의로 구본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
(단, 구본민 이사는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이므로 의결권 제한)
- 3) 함병석 사외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

나) 제2021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 개최일시 : 2021.02.08.(월), 11:00
- 안건 통지일 : 2021.02.01.(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3호 안건 2020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 (외부감사인 감사前)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2021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 개최일시 : 2021.02.24.(수), 11:30
- 안건 통지일 : 2021.02.17.(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이어서)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6호 안건 2020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특이사항 없음						접수
나. 제7호 안건 2020년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 현황	특이사항 없음						접수
다. 제8호 안건 2020년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라. 제9호 안건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마. 제10호 안건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특이사항 없음						접수
바. 제11호 안건 2020년 결산감사보고서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라) 제2021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 개최일시 : 2021.03.24.(수), 10:30
- 안건 통지일 : 2021.03.17.(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1.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12호 안건 2020년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 없음						접수
나. 제13호 안건 2020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이어서)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4. 의결안건							
가. 제4호 안건 2020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 (외부감사인 감사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5호 안건 이사 보수한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6호 안건 ¹⁾ 2021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정기주주총회 개최(03.25(목), 오후 4시) : 2020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 (외부감사인 감사 後), 이사 보수한도(안) 외 보고 1건

마) 제2021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 개최일시 : 2021.04.20.(화), 11:00
- 안건 통지일 : 2021.04.13.(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1.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14호 안건 2021년 1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특이사항 없음						접수
나. 제15호 안건 2021년 1분기 이사회 의결에 대한 업무집행상황	특이사항 없음						접수
다. 제16호 안건 2021년 1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결과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바) 제2021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

- 개최일시 : 2021.05.26.(수), 14:30
- 안건 통지일 : 2021.05.18.(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1.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7호 안건 ¹⁾ 감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8호 안건 ²⁾ 농협중앙회 차입(Credit Line) 약정 기한 연장(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9호 안건 ³⁾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감사위원회규정 제2장 제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⑤, ⑥항 신설 및 제9조(위원회의 권한위임) 일부개정
- 2) 유동성 비율 준수 및 예수금 안정화를 위해 기 체결한 차입 약정 기한연장
- 3) 박종봉 상무대우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신규 선임

사) 제2021년도 제7차 임시이사회

- 개최일시 : 2021.06.24.(목), 10:50
- 안건 통지일 : 2021.06.17.(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1.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17호 안건 2021년 1분기 결산보고 (외부감사인 검토 後)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아) 제2021년도 제8차 정기이사회

- 개최일시 : 2021.07.21.(수), 11:00
- 안건 통지일 : 2021.07.14.(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1.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18호 안건 2021년 2분기 이사회 의결에 대한 업무집행상황	특이사항 없음						접수
나. 제19호 안건 2021년 2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결과	특이사항 없음						접수
다. 제20호 안건 2021년 2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자) 제2021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

- 개최일시 : 2021.09.17.(금), 11:00
- 안건 통지일 : 2021.09.09.(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1.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21호 안건 2021년 반기 결산 보고 (외부감사인 검토 後)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 제10호 안건 ¹⁾ 이사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이어서)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나. 제11호 안건 ²⁾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12호 안건 ²⁾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전부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13호 안건 ³⁾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이사회규정 제9조(이사회 권한)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개정 및 폐지 권한 신설
- 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25.)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화
- 3)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종욱 전무를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1년 연임)
담당업무 : 경영지원본부 총괄, 전략기획, 재무관리 / 자격요건 : 충족

차) 제2021년도 제10차 정기이사회

- 개최일시 : 2021.10.27.(수), 14:00
- 안건 통지일 : 2021.10.20.(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1.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22호 안건 2021년 3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특이사항 없음						접수
나. 제23호 안건 2021년 3분기 이사회 의결에 대한 업무집행상황	특이사항 없음						접수
다. 제24호 안건 2021년 3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결과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카) 제2021년도 제11차 임시이사회

- 개최일시 : 2021.11.29.(월), 14:30
- 안건 통지일 : 2021.11.22.(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25호 안건 2021년 이사 및 이사회(위원회) 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 제14호 안건 농협은행 비대면 채널 상품 광고 제휴 계약체결(안) ¹⁾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15호 안건 2022년 NH저축은행 경영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 상법 § 398, 이사회규정 § 9에 의거 금융지주 자회사간 계약은 이사회 사전승인 대상 (NH농협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당사 상품 소개로 NH금융지주 계열사·자회사 간 시너지 제고)

타) 제2021년도 제12차 임시이사회

- 개최일시 : 2021.12.22.(수), 11:30
- 안건 통지일 : 2021.12.15.(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종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26호 안건 2021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접수
나. 제27호 안건 2021년도 3분기 결산보고 (외부감사인 검토 後)	특이사항 없음						접수
다. 제28호 안건 사외이사 후보군 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최광수	한상국	함병석	김응기	황중연	
(이어서)이사 성명							
4. 의결안건							
가. 제16호 안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¹⁾	찬성	찬성	찬성 ¹⁾	가결
나. 제17호 안건 ¹⁾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18호 안건 이사(대표이사) 보수(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19호 안건 ²⁾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호 안건 ³⁾ 비상임이사 후보자 자격심사(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21호 안건 ⁴⁾ 2021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이사회규정 제21조에 의거 임원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의결사항, 주주총회 안건 상정의 중요사안으로 이사회 결의 필요 (농협금융 자회사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통일화)
- 2) 위험관리책임자 사임에 따른 선임 필요,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영수 상무대우를 후보자로 선정한 후 선임
- 3) 민병익 비상임이사 선임 관련 후보자 자격검증 절차 진행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
- 4) 2021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개최(12.23(목), 오후 4시)
 - 총 안건 5건: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 이사(대표이사) 보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안) 2건, 비상임이사 선임(안)

라. 이사 및 이사회(위원회)에 대한 평가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평가

NH저축은행 이사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로 책임있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2월 전년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운영의 독립성, 운영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부문은 크게 “역할과 구성”, “운영” 두 부문으로, 평가항목은 이사회 10개, 위원회별 각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부문은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공정한 직무수행, 업무집행 및 감독기능 수행을 위한 독립성,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수준, 이사회 개최빈도 및 사전 안전제공 수준,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되며, 이사회내 위원회 부문은 위원회 직무 수행의 충실성,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개최횟수의 적정성, 자료의 충실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이사 전원의 설문조사(5점 척도법)로 평가하며, 평점 구간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이사회가 확정하고 이사 재선임 시 후보 추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출된 개선사항은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이사에 대한 평가

NH저축은행 이사회는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는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공정한 이사 평가로 책임 있는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2월 전년도 이사의 역할과 책임 부분을 점검합니다. 구

체적 점검 항목에는 저축은행의 경영목표에 대한 이해,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공정한 직무 수행, 이사회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의견 제시, 원활한 회의진행 협조 등이 평가지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설문조사(10개 문항, 5점 척도법)로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다면 평가(사외이사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이사회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장 평가), 이사회(위원회) 참여도, 교육 참여도 부분을 포함합니다. 또한 평점 구간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며,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관련된 세부내용은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4. 사외이사 활동 및 보수 등 → 바. 사외이사 평가] 참조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NH저축은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NH저축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2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NH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및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2021년도말 기준 총 4명의 위원(사외이사 3명, 비상임이사 1명, 총 4명)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보군을 구성하여 관리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여 단계별로 임원후보 추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결의한 사항을 분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2021년 12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자격검증을 수행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외이사 후보군의 변경(안)을 의결받아 관리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구성

NH저축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21년도말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1명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75%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2021.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외부	직위	선임일 및 임기만료일	약력
구본민	사외이사	위원장	'19.1.28.~'21.12.31.	- 법무법인 강남 구성 변호사(現) - 한중법학회 부회장(現) - 제13대 한국 법무보호복지 공단 이사장
김응기	비상임이사	위원	'19.1.1.~'21.12.31.	- 충남 보령 웅천농협조합장
한상국	사외이사	위원	'20.1.1.~'22.12.31.	- (주)한페이시스 경영자문역(現) - (주)한페이시스 대표이사
함병석	사외이사	위원	'21.1.1.~'22.12.31.	- (주)진코퍼레이션 경영자문역(現) - (주)농협정보시스템 대표이사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NH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4조(이사의 자격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5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 ①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농협금융의 비전을 공유하며 농협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2) 후보 추천 절차

NH저축은행은 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임원의 선임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대상을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후보를 심사·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며, 추천된 후보를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NH저축은행은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예비후보자를 탐색하여 후보군을 관리하고, 연 1회 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대표이사는 경영성과 등을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측정 지표는 계량평가와 비계량 역량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결과는 연임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성과보수 지급률 결정에 적용됩니다.

한편,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NH저축은행의 이사회는 이사 및 이사회(위원회) 평가 안을 2018년 1월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역할 및 책임, 참여도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종 평가결과는 이사 연임 시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평가는 2021년 10월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2021년 11월 제11차 임시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1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한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 최고경영자 후보군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2020년 12월말 총 50명으로 구성·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군은 기존 247명에서 1명이 제외되고, 신규 후보자 1명이 추가되어 2021년 12월말 총 247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NH저축은행 기존 대표이사인 김건영 대표이사의 임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0년 5월 14일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여러 단계(기간)에 따라 후보군을 추가·압축 및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6월 12일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광수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여 NH저축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였습니다. NH저축은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020년 6월 24일 최광수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마치고 주주총회에 추천하였으며, 해당 후보자는 2020년 6월 25일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21년도는 현재 대표이사의 임기 중으로 최고경영자승계 절차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기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인의 임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1년 12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상국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자 및 이항용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자의 자격검증·추천 절차가 진행되었고, 해당 후보자는 2021년 12월 23일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검증·추천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자의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이사구분	주요 약력	자격검증	추천여부	선임일
한상국	사외이사 감사위원	現 한페이시스(롯데) 자문역 前 한페이시스(롯데) 대표	여	여	'22.1.1. <연임>
이항용	사외이사 감사위원	現 한양大 경제금융대학 교수	여	여	'22.1.1. <신임>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1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¹⁾

- 개최일시 : 2021.01.27.(수), 11:20
- 안건 통지일 : 2021.01.20.(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김응기	한상국	함병석	
1. 이사 성명	구본민	김응기	한상국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²⁾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제한 ²⁾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구본민(사외이사) 임시위원장이 회의를 주재
- 2) 이사 전원의 동의로 구본민 사외이사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단, 구본민 이사는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이므로 의결권 제한)

나) 2021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개최일시 : 2021.12.22.(수), 11:10
- 안건 통지일 : 2021.12.15.(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구본민	김응기	한상국	함병석	
1. 이사 성명	구본민	김응기	한상국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2호 안건 ¹⁾ 사외이사 후보군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3호 안건 ²⁾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안)	찬성	찬성	제한 ²⁾	찬성	가결
다. 제4호 안건 ³⁾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사외이사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인사 247명 후보군 선정 관리
- 2) 이사 전원의 동의로 한상국 후보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
(단, 한상국 이사는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이므로 의결권 제한)
- 3)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이항용 후보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

3) 평가

NH저축은행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이사 및 이사회(위원회) 평가 안을 2018년 2월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였고, 본 평가 안을 활용하여 매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점검 항목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직무수행의 충실성,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이사 전원의 설문조사(5점 척도법)로 평가하고 평점 구간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모든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고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감사위원 후보

< ① 감사위원 후보 한상국 (추천일 : 2021. 12. 22.) >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한상국

(2) 출생연도 : 1959년생

(3) 출신학교 : 광주농高, 조선대학교 전자계산학,
세종대(원) 호텔 경영학 석·박사

(4) 경력

- 2005년 3월 ~ 2006년 3월 前 (주)롯데정보통신 고객지원팀 팀장
- 2006년 4월 ~ 2007년 5월 前 (주)롯데정보통신 솔루션사업부 부장
- 2007년 6월 ~ 2008년 5월 前 (주)롯데정보통신 영업전략팀 팀장
- 2008년 6월 ~ 2009년 5월 前 (주)롯데정보통신 전략구매팀 팀장
- 2009년 6월 ~ 2010년 3월 前 (주)롯데정보통신 감사팀 팀장
- 2010년 3월 ~ 2018년 3월 前 (주)한페이시스 대표이사
- 2018년 4월 ~ 현재 現 (주)한페이시스 경영자문역
- 2020년 1월 ~ 2021년 현재 現 NH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후보 제안자	경 력
구본민	2008년 3월 ~ 2009년 1월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2009년 2월 ~ 2013년 5월 前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2013년 5월 ~ 2015년 5월 前 법무법인 유한 강남 대표변호사
	2015년 5월 ~ 2018년 5월 前 제13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2017년 1월 ~ 현재 現 한중법학회 부회장
	2018년 7월 ~ 현재 現 법무법인 유한 강남 구성변호사

(2) 후보자와의 관계 : 업무상 외 개인적인 관계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한상국은 롯데 (주)한페이시스에서 오랜 기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경제·경영 분야에 폭 넓고 깊이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관련 분야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력으로 NH저축은행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NH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 리스크관리위원으로서의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해당 경험을 두루 활용하여 향후 NH저축은행 내실 경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주주, 임원 및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각계 전문가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평가 : 결격사유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아래와 같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관련 법령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평가 : 동 후보는 관련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NH저축은행은 후보자의 이력서, 취업승낙서, 자격요건 확인서 등을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소명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2021년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한상국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NH저축은행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후보자 본인 의결권 제한)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② 감사위원 후보 이항용 (추천일 : 2021. 12. 22.) >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이항용

(2) 출생연도 : 1965년생

(3) 출신학교 : 서울大 국제경제학, 서울大(원) 국제경제학 석사,
美 컬럼비아大(원) 경제학 박사

(4) 경력

- 2003년 8월 ~ 2004년 8월 前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원
- 2004년 8월 ~ 2007년 2월 前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2009년 3월 ~ 2012년 3월 前 KB자산운용 사외이사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前 한국국제경제학회 사무국장
- 2017년 8월 ~ 2018년 4월 前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 2016년 9월 ~ 2019년 9월 前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前 美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교환교수
- 2016년 3월 ~ 2021년 3월 前 나이스정보통신 사외이사
- 2007년 3월 ~ 현재 現 한양大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후보 제안자	경 력
한상국	2009년 6월 ~ 2010년 3월 前 (주)롯데정보통신 감사팀 팀장 2010년 3월 ~ 2018년 3월 前 (주)한페이시스 대표이사 2018년 4월 ~ 현재 現 (주)한페이시스 경영자문역

(2) 후보자와의 관계 : 개인적인 관계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이항용은 국제경제학 석사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오랫동안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KB자산운용 사외이사, 나이스정보통신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금융정책, 국제경제학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풍부한 연구 경력과 실무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NH저축은행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주주, 임원 및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각계 전문가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평가 : 결격사유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아래와 같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1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관련 법령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평가 : 동 후보는 관련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NH저축은행은 후보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자격요건 확인서 등을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소명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이항용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위해 2021년 12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NH저축은행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추천은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후보

< ① 사외이사 후보 한상국 (추천일 : 2021. 12. 22.) >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한상국

(2) 출생연도 : 1959년생

(3) 출신학교 : 광주농高, 조선대학교 전자계산학,
세종대(원) 호텔 경영학 석·박사

(4) 경력

- 2005년 3월 ~ 2006년 3월 前 (주)롯데정보통신 고객지원팀 팀장
- 2006년 4월 ~ 2007년 5월 前 (주)롯데정보통신 솔루션사업부 부장
- 2007년 6월 ~ 2008년 5월 前 (주)롯데정보통신 영업전략팀 팀장
- 2008년 6월 ~ 2009년 5월 前 (주)롯데정보통신 전략구매팀 팀장
- 2009년 6월 ~ 2010년 3월 前 (주)롯데정보통신 감사팀 팀장
- 2010년 3월 ~ 2018년 3월 前 (주)한페이시스 대표이사
- 2018년 4월 ~ 현재 現 (주)한페이시스 경영자문역
- 2020년 1월 ~ 2021년 현재 現 NH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5) 사외이사 경력

2020년 1월 ~ 2021년 현재 現 NH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한상국 후보자는 NH저축은행 사외이사 재직기간 중 이사회에 24회(참석률 100%), 이사회내 위원회에 46회(참석률 100%) 참석하였습니다. 활동 기간 중 주요 안건으로는 “NH저축은행 경영계획(안)”, “농협중앙회 차입(Credit Line) 약정 기한 연장(안)” 등입니다.

<재직기간¹⁾ 중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및 이사의 참여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이사회	개최	12	12	24	
	참여	12	12	24	
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	3	2	5
		참여	3	2	5
	감사위원회	개최	11	13	24
		참여	11	13	24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10	7	17
		참여	10	7	17
합계	개최	36	34	70	
	참여	36	34	70	
참석률(%)		100	100	100	

1) 재직기간 : 2020.01.01.~2021.12.31.

임기시작일부터 개최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 100%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 2021년 후보자의 연임 제안자

후보 제안자	경 력
구본민	2008년 3월 ~ 2009년 1월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2009년 2월 ~ 2013년 5월 前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2013년 5월 ~ 2015년 5월 前 법무법인 유한 강남 대표변호사 2015년 5월 ~ 2018년 5월 前 제13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2017년 1월 ~ 현재 現 한중법학회 부회장 2018년 7월 ~ 현재 現 법무법인 유한 강남 구성변호사

(2) 후보자와의 관계 : 업무상 외 개인적인 관계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한상국은 롯데 (주)한페이시스에서 오랜기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경제·경영 분야에 폭 넓고 깊이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재무·회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관련 분야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력으로 NH저축은행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NH저축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해당 경험을 두루 활용하여 향후 NH저축은행 내실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주주, 임원 및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각계 전문가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 등과 관계

- (1)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 업무상 외 개인적인 관계 해당사항 없음
- (2) 대주주와의 관계 : 업무상 외 개인적인 관계 해당사항 없음
- (3) 임원과의 관계 : 업무상 외 개인적인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평가 : 결격사유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아래와 같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평가 : 동 후보는 제15조 제2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한상국 후보자는 (주)한페이시스 대표이사 및 경영자문역 등 오랜 기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경제·경영 분야에 폭 넓고 깊이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재무·회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한상국 후보자는 NH저축은행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거래 관계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NH저축은행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한상국 후보자는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충실성

한상국 후보자는 NH저축은행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후보자의 검증된 근면성을 바탕으로 NH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NH저축은행은 후보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등을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소명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유한강남 등과 NH저축은행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거래가 없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2021년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한상국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NH저축은행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본인을 제외한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21년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2명이며 이중 1명이 연임하였고, 내부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등 출석률	평가 여부
한상국	2022.01.01.~2022.12.31.	여	100%	여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한상국 사외이사는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 운영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이슈사항으로는 NH저축은행 경영계획(안), 농협중앙회 차입(Credit Line) 약정 기한연장(안) 등이 있었으며, 한상국 사외이사는 재무·회계 부문에서 많은 조언을 해 NH저축은행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상국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실시한 이사 평가에서도 경영목표에 대한 이해,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공정한 직무 수행 등에서 우수한 판정(A등급)을 받는 등 사외이사 후보로서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첨: 사외이사 검토보고서

<첨부>

사외이사 검토보고서 (2021.12.22.)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 검토보고서

후보대상자	검토의견
한 상 국	적 정 함

본 위원회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NH저축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구 본 민** (서명 또는 날인)

위원 **김 응 기** (서명 또는 날인)

위원 **함 병 석** (서명 또는 날인)

(별첨 2)

한상국 후보자 이사 평가결과

재임 기간 : 2019. 1. 1. ~ 2021. 12. 현재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사외이사평가, 이사회활동평가, 위원회평가
- 평가 년도 : 2020년도, 2021년도
- 평가 방법 : 세부평가 방법 <별첨>참조
- ▶ 평가등급 산정표 : 총득점 구간별로 평가등급을 4단계로 구분 적용

등 급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총득점	85점 이상	75점 이상~ 85점 미만	65점 이상~ 75점 미만	65점 미만

평가 결과

- 사외이사 평가 : A등급(탁월)
- ▶ 평가항목 : 실무지평가, 이사회평가(참석률), 교육참여도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평균
평가등급	A등급	A등급	A등급

- 이사회활동 평가 : A등급(탁월)
- ▶ 평가항목 : 이사회 활동 평가(이사전면이 설문조사로 평가)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평균
총합평점	A등급	A등급	A등급

- 위원회 평가 : A등급(탁월)
- ▶ 소속위원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평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A등급	A등급	A등급
감사위원회	A등급	A등급	A등급
리스크관리위원회	A등급	A등급	A등급

종합 의견 : A등급(탁월)

< ② 사외이사 후보 이항용 (추천일 : 2021. 12. 22.) >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이항용

(2) 출생연도 : 1965년생

(3) 출신학교 : 서울大 국제경제학, 서울大(원) 국제경제학 석사,
美 컬럼비아大(원) 경제학 박사

(4) 경력

- 2003년 8월 ~ 2004년 8월 前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원
- 2004년 8월 ~ 2007년 2월 前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2009년 3월 ~ 2012년 3월 前 KB자산운용 사외이사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前 한국국제경제학회 사무국장
- 2017년 8월 ~ 2018년 4월 前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 2016년 9월 ~ 2019년 9월 前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 2012년 1월 ~ 2012년 12월 前 美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교환교수
- 2016년 3월 ~ 2021년 3월 前 나이스정보통신 사외이사
- 2007년 3월 ~ 현재 現 한양大 경제금융대학 교수

(5) 사외이사 경력

- 2009년 3월 ~ 2012년 3월 前 KB자산운용 사외이사
- 2016년 3월 ~ 2021년 3월 前 나이스정보통신 사외이사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제안자 인적사항

후보 제안자	경 력
한상국	2009년 6월 ~ 2010년 3월 前 (주)롯데정보통신 감사팀 팀장 2010년 3월 ~ 2018년 3월 前 (주)한페이시스 대표이사 2018년 4월 ~ 현재 現 (주)한페이시스 경영자문역

(2) 후보자와의 관계 : 개인적인 관계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이항용은 국제경제학 석사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오랫동안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KB자산운용 사외이사, 나이스정보통신 사외이사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금융정책, 국제경제학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런 풍부한 연구 경력과 실무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지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NH저축은행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주주, 임원 및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각계 전문가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 등과 관계

(1)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관계 : 업무상 외 개인적인 관계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관계 : 업무상 외 개인적인 관계 해당사항없음

(3) 임원과의 관계 : 업무상 외 개인적인 관계 해당사항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평가 : 결격사유 없음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아래와 같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 평가 : 동 후보는 제15조 제2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이향용 후보자는 국제경제학 석사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금융정책, 국제경제학 분야 등 금융·재무·회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이항용 후보자는 NH저축은행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거래 관계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 윤리성, 책임성

이항용 후보자는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충실성

이항용 후보자는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나, NH저축은행 사외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본인 소명

NH저축은행은 후보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등을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소명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 결과

이항용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위해 2021년 12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차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NH저축은행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며 해당안건은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이항용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이항용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NH저축은행은 주주, 임원 및 외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군 중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의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부 경영기획팀은 실무적으로 후보군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관리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이를 제공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군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NH저축은행은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주주, 임원 및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배경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사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될 수 있도록 후보군 관리를 점검하고 연 1회 이사회에 후보군 관리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 247명에서 1명을 제외하고 신규 후보자 1명을 추가하여 2021년 12월말 기준 247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변동·관리 현황을 제12차 임시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3) 후보군 현황

- 2021년 12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단위 : 명, %)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금융	64	25.8
경영	46	18.6
경제	58	23.5
법률	40	16.2
농업경제	12	4.9
IT	14	5.7
소비자보호	13	5.3
합계	247	100

추천 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지원부서	121	49.0
외부추천	126	51.0
합계	247	100

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 관련 보고한 내용

- 2021년 12월 제12차 임시이사회

(단위 : 명, %)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금융	64	25.8
경영	46	18.6
경제	58	23.5
법률	40	16.2
농업경제	12	4.9
IT	14	5.7
소비자보호	13	5.3
합계	247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지원부서	121	49.0
외부추천	126	51.0
합계	247	100

아.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2021년 말 기준)

- 부서명 : 기획총무부(경영기획팀)
- 직원수 : 총 4명 (부장 1명, 팀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 운영내역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내용
2021.12.2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 일시, 안건 내용

가) 이사회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2. 이사회 → 다. 활동내역 →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라. 활동내역 및
평가 →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다) 감사위원회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7 감사위원회 → 다. 활동내역 →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 6. 리스크관리위원회 → 다. 활동내역 →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구본민

(1) 활동내역

구본민 사외이사는 2021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12회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중 2회, 감사위원회 13회 중 1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7회 중 7회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금융 및 법률 부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하여 회사 가치 증대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본민 사외이사는 NH저축은행의 이사로서 사전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중 총 28시간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안전에 동의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한상국

(1) 활동내역

한상국 사외이사는 2021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12회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중 2회, 감사위원회 13회 중 1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7회 중 7회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경영 및 재무, 회계 부문 등에 대한 전문적 이론 및 실무적 경험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하여 회사 가치 증대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상국 사외이사는 NH저축은행의 이사로서 사전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중 총 28시간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안전에 동의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함병석

(1) 활동내역

함병석 사외이사는 2021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12회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회 중 2회, 감사위원회 13회 중 13회, 리스크관리위원회 7회 중 7회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경영 및 재무, 회계 부문 등에 대한 전문적 이론 및 실무적 경험으로 활발한 의견개진 및 심의를 통하여 회사가치 증대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함병석 사외이사는 NH저축은행의 이사로서 사전 안전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21년 중 총 28시간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안전에 동의하였습니다.

라) 요약

구분 사외 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시간 ¹⁾ 실적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구분민	12	12	21	2	2	4	13	13	27	7	7	7	28시간
한상국	12	12	21	2	2	4	13	13	27	7	7	7	28시간
함병석	12	12	21	2	2	4	13	13	27	7	7	7	28시간

1) 활동시간에는 사전 안전 검토 및 설명, 회의 참석, 간담회 실적 등을 포함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 1) 가입기간 : 2021.2.1. ~ 2022.2.1. (1년)
- 2) 가입사 : NH농협손해보험(주)
- 3) 보장내용 :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로 인하여 제기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 4) 보험금 : 50억원(연간 총 한도)
 ※ 자기부담금 설정금액 : 20%(단, 사외이사 연간보수 이내)
- 5) 보험료 : 23,252천원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최초 선임일)	구본민 (2019.1.28.)	한상국 (2020.1.1.)	함병석 (2021.1.1.)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NH저축은행 이사 연수(2021.01.27.) 내용 : 2020년 경영성과 및 2021년 사업계획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NH저축은행 이사 간담회(2021.04.17.) 내용 : 2021년 회사·임원 경영평가 전반 설명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NH저축은행 이사 연수(2021.05.3.~2021.05.31.) 내용 : 경영진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마.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NH저축은행 이사 연수(2021.11.25.) 내용 : NH저축은행 경영계획 설명 및 이해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바.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연수(2021.11.29.) 내용 : 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15	15	15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2021.12.31. 기준)

1) 사외이사 구분민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임원의 자격요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 평가 : 결격사유 없음
 선임 시 자격요건 뿐 아니라, 선임 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심사항목 :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 평가 : 모두 충족
 선임 시 자격요건 뿐 아니라, 선임 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

(1) 전문성

구분민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유한 강남 구성변호사, 한중법학회 부회장, 13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법률 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폭 넓고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직무공정성

구분민 사외이사는 NH저축은행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거래 관계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NH저축은행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3) 윤리성, 책임성

구본민 사외이사는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충실성

구본민 사외이사는 NH저축은행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충족	법률분야 등에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충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충족	이사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2) 사외이사 한상국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임원의 자격요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 평가 : 결격사유 없음

선임 시 자격요건 뿐 아니라, 선임 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심사항목 :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 평가 : 모두 충족

선임 시 자격요건 뿐 아니라, 선임 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

(1) 전문성

한상국 사외이사는 (주)한페이시스 대표이사 및 경영자문역 등 오랜 기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경제·경영 분야에 폭 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재무·회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직무공정성

한상국 사외이사는 NH저축은행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거래 관계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3) 윤리성, 책임성

한상국 사외이사는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충실성

한상국 사외이사는 NH저축은행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충족	경제·경영 분야 및 회계 재무 등에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충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충족	이사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3) 사외이사 합병석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 임원의 자격요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 평가 : 결격사유 없음

선임 시 자격요건 뿐 아니라, 선임 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심사항목 :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 평가 : 모두 충족

선임 시 자격요건 뿐 아니라, 선임 후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

(1) 전문성

합병석 사외이사는 (주)농협정보시스템 대표이사 및 (주)진코퍼레이션 경영자문역을 역임하는 등 전문경영인으로서 IT·경제·경영 분야에 폭 넓고 깊이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재무·회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경영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직무공정성

합병석 사외이사는 NH저축은행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거래 관계가 없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3) 윤리성, 책임성

합병석 사외이사는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충실성

함병석 사외이사는 NH저축은행 사외이사 재임기간 중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교육 등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의안 사전 검토 등 사외이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 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나. 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해당사항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충족	경제·경영 분야 및 회계 재무 등에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풍부
나. 직무공정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충족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 가능
다. 윤리책임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충족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 보유
라. 충실성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5조)	충족	이사회(위원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마. 기부금 등 지원 내역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기부한 금융회사등	지원 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선임전	선임후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NH저축은행은 매년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이행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이사 및 이사회(위원회) 평가 안을 2016년 12월 제13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부터 매년 이사의 역할 및 책임, 참여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저축은행의 경영목표에 대한 이해,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공정한 직무 수행, 이사회 안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 원활한 회의진행 협조 등이 포함됩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 본인에 의한 평가, 사외이사 상호 간의 평가, 이사회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서장에 의한 평가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 ② **평가 기준** : 2021년 평가항목은 자기평가, 상호평가, 직원평가, 이사회 참여도 등으로 구분하며 NH저축은행의 경영목표에 대한 이해,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공정한 직무 수행, 이사회 안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 원활한 회의진행 협조 등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 평가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 평가 등을 실시합니다. 평가결과는 우수(A등급), 양호(B등급), 보통(C등급), 미흡(D등급) 4단계로 구분합니다.
- ③ **평가 절차** : 사외이사들과 이사회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부서장(3인) 등에게 평가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지 항목에 의한 평가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 교육 참여시간 등을 통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④ 평가의 객관성 제고 장치 : 위 평가주체·기준·방법 등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관련 직원에 의한 평가, 참석률 평가 등 객관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NH저축은행은 사외이사 재선임을 위한 후보추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도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2021년 10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2021년도 11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2021년도 NH저축은행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 사외이사 전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개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사항
2021년도	구본민	우수(A등급)	-
	한상국	우수(A등급)	-
	함병석	우수(A등급)	-

3) 외부평가 : 해당사항 없음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 사외이사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NH저축은행은 업무분장 세칙에서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획총무부 내 경영기획팀에 분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현재 경영기획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수는 부장 1명, 팀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구체적인 사외이사 지원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회와 관련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 기록·관리
-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및 제반업무 등
-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제공 및 발송 지원
- 이사회 및 이사의 각종 법규준수를 위한 지원
- 기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 지원 등

NH저축은행의 기획총무부 경영기획팀은 2021년 위에서 정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였고, 2021년 총 12회의 이사회, 2회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의내용을 기록유지 하였으며 사외이사의 지시사항 처리 및 이사회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의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구분민

가) 재직기간 : 2019.1.28. ~ 2021.12.31. (35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2021.1월 ~ 2021.12월 기준)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250만원	
기본급	3,600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회의참석비)	650만원	회의 참석일 기준 13회× 50만원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의	-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유	종합검진 1회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의제공	무	

2) 사외이사 한상국

가) 재직기간 : 2020.1.1. ~ 2021.12.31. (24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2021.1월 ~ 2021.12월 기준)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250만원	
기본급	3,600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회의참석비)	650만원	회의 참석일 기준 13회× 50만원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의	-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유	종합검진 1회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의제공	무	

3) 사외이사 합병석

가) 재직기간 : 2021.1.1. ~ 2021.12.31. (12개월)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의 제공 현황

(2021.1월 ~ 2021.12월 기준)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4,250만원	
기본급	3,600만원	
상여금	-	
기타 수당 (회의참석비)	650만원	회의 참석일 기준 13회 × 50만원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의	-	
업무활동비	무	
건강검진 지원	유	종합검진 1회
차량제공	무	
사무실제공	무	
기타 편의제공	무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NH저축은행의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 체결한 계약이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2021.12.31. 기준)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허충희	'15.1.20.	'17.1.19.	24개월	사추위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사추위원장 (16.1~16.10) 감사위원장 (16.1~17.1)	농협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여종균	'15.1.20.	'17.1.19.	12개월	사추위 감사위 리관위	-	농협금융지주 홍보부장 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장
전용석	'16.1.21.	'18.1.20.	12개월	사추위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	농협금융지주 홍보부장 농협은행 국회지점장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김익수	'16.1.21.	'18.1.20.	12개월	사추위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	농협금융지주 시너지추진부장 농협금융지주 투자전략단장
박용순	'17.1.18.	'18.12.31.	24개월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감사위원장 (17.1~17.12) 임추위원장 (18.1~18.12)	(주)하이마트 상임감사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
박창수	'17.1.18.	'18.12.31.	24개월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임추위원장 (17.1~17.12) 감사위원장 (18.1~18.12)	강원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강원도 지방(부)이사관
차순관	'17.1.18.	'19.12.31.	36개월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리관위원장 (17.1~18.12) 임추위원장 (19.1~19.12)	부관훼리(주) 부사장 KB저축은행 대표이사
김승동	'19.1.1.	'20.12.31.	24개월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리관위원장 (19.1~20.12)	한국NGO신문회장 사단법인 아이코리아 이사 CBS 논설위원장
구본민	'19.1.28.	'21.12.31.	35개월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감사위원장 (19.1~19.12) 임추위원장 (20.1~21.12)	법무법인 강남구성 변호사 한중법학회 부회장 제13대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이사장
한상국	'20.1.1.	'21.12.31.	24개월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감사위원장 (20.1~21.12)	(주)한페이시스 경영자문역 (주)한페이시스 대표이사
함병석	'21.1.1.	'22.12.31.	12개월	임추위 감사위 리관위	리관위원장 (21.1~21.12)	(주)진코퍼레이션 경영자문역 (주)농협정보시스템 대표이사

비고) 여종균 이사 : 16.1.21 사임, 허충희 이사 : 17.1.18 사임, 전용석 이사 : 17.1.18 사임
 김익수 이사 : 17.1.18 사임, 박용순 이사 : 18.1.21 퇴임, 박창수 이사 : 18.1.21 퇴임
 차순관 이사 : 19.12.31 퇴임, 김승동 이사 : 20.12.31 퇴임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NH저축은행은 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령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10월 제11차 이사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가)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NH저축은행은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농협금융의 비전을 공유하며 농협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고경영진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NH저축은행은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선발·관리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 관리에 관한 사항 및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내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NH저축은행은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2017년 12월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후보군 99명을 최초 선정하였으며 지속적인 후보자 관리를 통해 2020년말 기준 50명의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사임, 관계법령 및 정관 등 관련 규정상 자격상실, 해임 등 최고경영자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됩니다.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기는 임기만료 시 임기만료 40일 이전(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이며,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체없이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합니다.

라) 최종후보자 추천절차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에 관리 중인 후보군을 검토하여 자문기관을 통한 외부인력 추가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군을 확정하게 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확정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지원 부서에서 작성한 서류심사 및 평판조회 등을 참고하여 후보군을 압축합니다. 그 후 이력서 등을 통해 후보자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과 경영방침을 심사하여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합니다.

마) 경영승계절차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으로 부의하고,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로 최고경영자(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바) 후보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안정적 경영승계 및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하여 다양한 최고경영자 후보군 자질향상(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농협금융 리더 양성 교육(농협금융리더를 위한 핵심 인사이트 등) 및 특강 경영진 조찬간담회, CEO관련 포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경영자로서의 기본 자질 함양 도모 및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비상계획

NH저축은행은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구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3조에 의거, 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하되, 상법 제408조에서 규정한 회사의 상무(常務)에 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회사가 보유하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압축 및 자격검증을 수행하고,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최종후보자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추천된 최고경영자 후보는 주주총회 결의로써 선임을 완료하고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가) 관련법령

- ①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②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5조 제1항

나) 평가

최광수 후보는 NH저축은행 대표이사(최고경영자)로 선임될 후보로 추천된 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당사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소극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법령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이며 관련 규정에서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사실 및 징계나 형을 받은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한이 지났는지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가) 자격요건

NH저축은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5조 제2항에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5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농협금융의 비전을 공유하며 농협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나) 평가

최광수 후보자는 1987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2013년부터 농협은행 수원시지부 지부장, 성남시지부 지부장, 신탁부 부장을 거쳤으며, 2016년도에는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본부장, 2018년에는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무를 역임하여 금융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학원 디지털정보학 석사, 수원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등 NH저축은행의 CEO로 요구되는 금융·경영·IT관련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농협금융의 비전 제시능력을 두루 발휘할 후보자라 평가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최광수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령 및 내·외규상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여 2020년 6월 24일 대표이사(최고경영자) 후보로 결정, 주주총회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대표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당행이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라 .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2021년 기간 중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사례가 없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2021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NH저축은행은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계획에 따라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압축, 예비후보자 및 최종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합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2021년 중 후보군 관리 활동 실적이 없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지원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와 더불어 기획총무부 경영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부서인 기획총무부 인사총무팀은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NH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2017년 제1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

보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말 현재 관리 중인 후보군은 50명이며, 농협금융 핵심포지션 담당 경영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NH저축은행은 2017년 1월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하였고, 향후 관리하고 있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추가 점검하고, 수정·보완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NH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4조에 따라 인사담당부서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지원은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와 더불어 기획총무부 경영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부서인 기획총무부 인사총무팀에서는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기획팀은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외에도 사업계획 및 경영전략 수립, 종합예산안 편성, 대내외 보고서 작성,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심사·합의·해석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무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적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중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업무는 인사담당 부서인 인사총무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수행 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H저축은행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4조에 따른 승계업무 지원부서의 역할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검증,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그 밖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지원 등입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업무 추진현황을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최고경영자 승계업무와 관련하여 동 내용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하였고, 2017년 1월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및 상시적

인 후보군 관리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기획팀은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선발된 후보군의 평가 및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후보군의 평판조회와 주요성과에 대한 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2021년 말 기준)

- 부서명 : 기획총무부 경영기획팀
- 직원수 : 총 4명 (부장 1명, 팀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NH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감독 뿐 아니라 적정성 감독을 수행합니다.

NH저축은행에서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경영진 등에 대한 보상을 심의·의결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이 검증된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심의·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보상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등 안건에 대한 감독

NH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부의되는 안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적법성을 심의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감사위원회는 12회의 이사회 안건 모두와 이사회내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도 심의를 거쳤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NH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 412, 지배구조법 § 20④)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 402).

이에 따라 2021년 2월에 소집된 2021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는 결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경영진의 업무보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기획총무부장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NH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외감법 § 4, § 10).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1년 11월에 NH저축은행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선정 하였습니다.

다) 상근감사위원 관련 사항

NH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상근감사위원을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감사보조조직인 감사실장이 대행하여 주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규정 § 17 및 감사규정 § 5)

라) 재무제표 검토 등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감사위원회는 동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4주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개최된 감사위원회는 제11회계년도(2020년 12월말) 결산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작성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합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2021년 1월 개최된 감사위원회에 제11회계년도(2020.12월말)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실태를 보고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NH저축은행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점검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1년 1월 개최된 제1차 감사위원회, 2021년 4월에 개최된 제5차 감사위원회, 2021년 7월에 개최된 제8차 감사위원회, 2021년 10월에 개최된 제10차 감사위원회에서 총 4회에 걸쳐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심의 하였으며, 2021년 2월에 개최된 제3차 감사위원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심의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와 사외이사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정관에 따라 2021년 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 합니다.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2) 구성원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 : 2021.12.31. 기준>

성명	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한상국	사외	감사위원장	'20.01.01	'22.12.31
구분민	사외	감사위원	'19.01.28	'21.12.31
함병석	사외	감사위원	'21.01.01	'22.12.31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13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의결안 20건, 심의안 7건, 보고 9건 이었습니다.

가) 제2021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1.27.(수), 10:30
- 안건 통지일 : 2021.01.20.(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1호 안건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나. 제2호 안건 2020년 하반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다. 제3호 안건 2021년도 1분기 매각채권 감사결과 보고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¹⁾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심의 제2호 안건 2020년도 4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안)	-	-	-	접수

1) 한상국 위원 감사위원장으로 선임

나) 제2021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2.08.(월), 11:20
- 안건 통지일 : 2021.02.01.(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4호 안건 2020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외부감사인 감사 前)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다) 제2021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2.24.(수), 10:30
- 안건 통지일 : 2021.02.17.(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3호 안건 2020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심의 제4호 안건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안)	-	-	-	접수
다. 심의 제5호 안건 2020년 결산감사 보고서(안)	-	-	-	접수

라) 제2021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3.24.(수), 11:00
- 안건 통지일 : 2021.03.17.(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분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5호 안건 2021년도 1분기 매각채권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 제6호 안건 2020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외부감사인 보고 後)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7호 안건 이사 보수한도(안)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021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4.20.(화), 10:30
- 안건 통지일 : 2021.04.13.(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분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8호 안건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심의 제9호 안건 2021년 1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서(안)	-	-	-	접수
다. 제10호 안건 2020년도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실장 성과평가 결과(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이어서)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라. 제11호 안건 2021년도 대표이사 성과평가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12호 안건 2021년도 집행임원 및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실장 성과평가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제2021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5.26.(수), 13:30
- 안건 통지일 : 2021.05.18.(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6호 안건 NH금융지주 정기감사 결과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 제13호 안건 감사실 소관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¹⁾

1) 조건부가결 (사유 : 감사규정 시행일 수정)

사) 제2021년도 제7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6.24.(목), 10:30
- 안건 통지일 : 2021.06.17.(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4호 안건 내부감사부서장(내부감사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제2021년도 제8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7.21.(수), 10:30
- 안건 통지일 : 2021.07.14.(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7호 안건 2021년 상반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나. 제8호 안건 사고처리 특별감사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 제15호 안건 감사업무세척 일부개정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심의 제16호 안건 2021년 2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안)	-	-	-	접수

자) 제2021년도 제9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8.25.(수), 10:30
- 안건 통지일 : 2021.08.18.(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9호 안건 2021년도 3분기 매각채권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 제17호 안건 외부감사인 선정방안(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제2021년도 제10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10.27.(수), 13:30
- 안건 통지일 : 2021.10.20.(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심의 제18호 안건 2021년도 3분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안)	-	-	-	접수

카) 제2021년도 제11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11.29.(월), 13:30
- 안건 통지일 : 2021.11.22.(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9호 안건 외부감사인 선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타) 제2021년도 제12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12.22.(수), 10:30
- 안건 통지일 : 2021.12.15.(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20호 안건 2021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1호 안건 2022년 감사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심의 제22호 안건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	-	-	접수

파) 제2021년도 제13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12.22.(수), 12:00
- 안건 통지일 : 2021.12.15.(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23호 안건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안)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4호 이사(대표이사) 보수(안)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이어서)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다. 제25호 안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안) ¹⁾	제한 ¹⁾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6호 안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안) ²⁾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제27호 안건 비상임이사 선임(안)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한상국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단, 한상국 위원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이므로 의결권 제한)
- 2) 이항용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 3) 민병익 비상임이사 선임

3) 평가

NH저축은행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로 책임 있는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이사 및 이사회(위원회) 평가 안을 2016년 12월 제13차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1월부터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문은 크게 “역할 및 구성”, “운영의 적정성” 두 부문으로, 평가항목은 각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부문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직무 수행의 충실성,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개최횟수의 적정성, 자료의 충실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이사 전원의 설문조사(5점 척도법)로 평가하며, 평점 구간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사 및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 평가결과는 전부문 A등급으로 우수하게 평가 되었으며, 평가결과는 2021년도 11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라. 감사 보조조직 등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으로 감사실을 두며, 감사실은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적정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현재 감사실은 실장 1명, 과장 1명, 대리 1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장은 감사실시,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감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을 하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NH저축은행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H저축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을 수립·승인하는 독립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 21 i,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6① i). 2021년 12월 개최된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2022년 리스크 유형별 위험자본 및 리스크허용한도 관리계획을 수립·의결 하였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위험자본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위험성향을 설정합니다(지배구조법 § 21 ii,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6① ii).

위험성향(Risk Appetite)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가용자본 이내에서 측정 및 관리 대상 리스크 총 합계의 최대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위험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 선호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개최된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위험성향 설정을 포함한 리스크

유형별 위험자본 관리계획을 수립·의결 하였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설정한 위험성향 이내에서 개별 리스크별로 위험자본 한도를 세분화하여 배분합니다(지배구조법 § 21 iii,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6① iii).

2021년 12월 개최된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유형별 위험자본 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익스포저 한도관리기준을 수립하여 토탈 익스포저(TE), 부문 익스포저(SE), 산업별 익스포저 한도의 관리를 명확히 합니다.

리스크유형별 위험자본 관리계획과 익스포저 한도관리기준의 수립은 경영진이 투자와 자금운용 등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세우고 리스크관리에 기반한 경영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라) 위험관리 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 유형별 관리방법, 위기상황 대응체계 관리방법 등 리스크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기준 수립을 위해 리스크관리 관련 제규정을 제정하고 관리합니다(지배구조법 § 21 iv,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 6① iv).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의 개정·폐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NH저축은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9조의 취지에 따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제8차 임시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을 새로이 제정하고, 리스크관리규정을 전부개정하여 리스크관리규정의 운영권한을 이사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로 위임하는 등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제6조에서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1) 총괄

NH저축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 시까지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리스크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합니다.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사외이사 3명 및 비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 2021.12.31. 기준.>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함병석	사외	리스크관리위원장	'21.01.01.	'22.12.31.
구본민	사외	리스크관리위원	'19.01.28.	'21.12.31.
한상국	사외	리스크관리위원	'20.01.01.	'22.12.31.
김응기	비상임	리스크관리위원	'19.01.01.	'21.12.31.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1년도에는 총 7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의결안 7건, 보고 9건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1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1.27.(수), AM 11:40
- 안건 통지일 : 2021.01.20.(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함병석	구본민	한상국	김응기	
1. 위원 성명	함병석	구본민	한상국	김응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호 안건 ¹⁾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제한 ¹⁾	찬성	찬성	찬성	가결

1) 함병석 위원장 선출

(단, 함병석 위원은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이므로 의결권 제한)

나) 제2021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2.24.(수), AM 11:00
- 안건 통지일 : 2021.02.17.(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함병석	구본민	한상국	김응기	
1. 위원 성명	함병석	구본민	한상국	김응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1호 안건 ¹⁾ 2020년 4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 없음				접수
나. 제2호 안건 ²⁾ 2020년 4분기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 없음				접수
다. 제3호 안건 ³⁾ 신용평가모형(중금리CSS)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 없음				접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이어서) 위원 성명	함병석	구본민	한상국	김응기	
4. 의결안건					

- 1) 리스크관리 지표의 총괄 및 상세 현황, 리스크관리 관련 주요 추진 현황, 익스포저한도 관리 현황 등 보고 (2020년 4분기말 기준)
- 2) 여신감리규정에 따라 실시한 여신심사감리 결과 보고 (2020년 4분기말 기준)
- 3) 신용평가모형 안정성 분석 및 변별력 측정

다) 제2021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5.26.(수), PM 14:00
- 안건 통지일 : 2021.05.18.(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함병석	구본민	한상국	김응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4호 안건 ¹⁾ 2021년 1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 없음				접수
나. 제5호 안건 ²⁾ 2021년 1분기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 제2호 안건 ³⁾ 농협중앙회 차입(Credit Line) 약정 기한 연장(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리스크관리 지표의 총괄 및 상세 현황, 리스크관리 관련 주요 추진 현황, 익스포저한도 관리 현황 등 보고 (2021년 1분기말 기준)
- 2) 여신감리규정에 따라 실시한 여신심사감리 결과 보고 (2021년 1분기말 기준)
- 3)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부문 차입 약정 연장(안정적 예비유동성 확보)

라) 제2021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8.25.(수), AM 11:00
- 안건 통지일 : 2021.08.18.(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함병석	구본민	한상국	김응기	
1. 위원 성명	함병석	구본민	한상국	김응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6호 안건 ¹⁾ 2021년 2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 제3호 안건 ²⁾ 신용평가모형 재개발(고도화)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리스크관리 지표의 총괄 및 상세 현황, 리스크관리 관련 주요 추진 현황, 익스포저한도 관리 현황 등 보고 (2021년 2분기말 기준)
- 2) 기존 신용평가모형의 성능 보완을 위한 방안 및 계약 내용

마) 제2021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9.17.(금), AM 10:30
- 안건 통지일 : 2021.09.09.(목)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함병석	구본민	한상국	김응기	
1. 위원 성명	함병석	구본민	한상국	김응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7호 안건 ¹⁾ 2021년 2분기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 제4호 안건 ²⁾ 익스포저한도 관리세칙 일부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여신감리규정에 따라 실시한 여신심사감리 결과 보고 (2021년 1분기말 기준)
- 2) TE한도 관리대상 중 예치금, 금전채권(신탁) 추가

바) 제2021년도 제6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11.29.(월), PM 13:50
- 안건 통지일 : 2021.11.22.(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함병석	구본민	한상국	김응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8호 안건 ¹⁾ 2021년 3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 1) 리스크관리 지표의 총괄 및 상세 현황, 리스크관리 관련 주요 추진 현황, 익스포저한도 관리 현황 등 보고 (2021년 3분기말 기준)

사) 제2021년도 제7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12.22.(수), AM 10:50
- 안건 통지일 : 2021.12.15. (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함병석	구본민	한상국	김응기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9호 안건 ¹⁾ 2021년 3분기 여신감리 결과	특이사항 없음				접수
4. 의결안건					
가. 제5호 안건 ²⁾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6호 안건 ³⁾ 2022년 위험자본 관리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7호 안건 ⁴⁾ 2022년 리스크한도 설정(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1) 여신감리규정에 따라 실시한 여신심사감리 결과 보고 (2021년 3분기말 기준)
- 2) 감독규정 개정으로 최소적립률을 초과한 대손충당금 적립 시 추가적립기준 마련
- 3) 리스크 유형별 한도, 자산건전성비율 한도, 유동성비율 한도 등 리스크 허용 한도 설정
- 4) 동일차주(계열), 동일인(기업), 산업별 익스포저에 대한 한도 설정

3) 평가

NH저축은행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로 책임 있는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이사 및 이사회(위원회) 평가 안을 2016년 12월 제13차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1월부터 전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평가부문은 크게 “역할 및 구성”, “운영의 적정성” 두 부문으로, 평가항목은 각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부문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직무 수행의 충실성,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개최횟수의 적정성, 자료의 충실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이사 전원의 설문조사(5점 척도법)로 평가하며, 평점 구간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사 및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 평가결과는 전부문 A등급으로 우수하게 평가 되었으며, 평가결과는 2021년도 11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2021년 중 NH저축은행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행정지도 등의 조치사항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NH저축은행은 성과 및 보수체계가 회사의 경영성과, 리스크구조 등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NH저축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당행 정관 제37조 제1항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사위원회로 대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감사위원회’ 라고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 소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2016년 10월부터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규정 제15조에 의거 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감사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감사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감사위원회는 총 3인(한상국, 구본민, 함병석)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 3인이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인 한상국, 구분민, 함병석 이사는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보수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2021년 12월말 현재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관위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중시한 경험 여부	약력
한상국	위원장	사외 (리관위위원)	여	- 한페이시스(롯데)자문역 - 롯데정보통신 감사팀 팀장
구분민	위원	사외 (리관위위원)	부	- 법무법인 강남 구성 변호사 - 한중법학회 부회장 - 제13대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함병석	위원	사외 (리관위위원)	부	- (주)진코퍼레이션 경영자문역 - (주)농협정보시스템 대표이사 - 농협중앙회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한상국	사외	감사위원장	'20.01.01	'22.12.31
구분민	사외	감사위원	'19.01.28	'21.12.31
함병석	사외	감사위원	'21.01.01	'22.12.31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NH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관계 임직원 및 외부 관계인을 출석 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NH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2021년 4월 개최된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2020년도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실장 성과평가 결과안, 2021년도 대표이사 성과평가 운영안, 2021년도 집행임원,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실장 성과평가 운영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NH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2021년 2월 개최된 제3차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지급에 관한 ‘2020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NH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2021년 4월 개최된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2021년도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실장 성과평가 운영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NH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회의 소집방법 및 소집절차, 결의방법, 부의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NH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2021년 4월 개최된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체계가 재무상황 및 위험성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NH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2021년 2월 개최된 제3차 감사위원회에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독립적으로 의결하였고 2021년 4월 개최된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연차보상평가(경영진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회사의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의 운영이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차보상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 ① 국내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적용
- ② 해외 : 해당자 없음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NH저축은행 감사위원회는 2021년 4월 개최된 제5차 감사위원회에서 변동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범주에 따라 2021년 말 기준 변동보상 대상자는 대표이사 1명, 업무집행책임자 3명으로 총 4명이며, 금융투자업무담당자와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4명	대표이사(1명), 업무집행책임자(3명)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	해당사항 없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1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당행은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13회의 감사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보수체계와 관련한 안건은 의결안 4건 이었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1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2.24.(수), 10:30
- 안건 통지일 : 2021.02.17.(수)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3호 안건 2020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21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개최일시 : 2021.04.20.(화), 10:30
- 안건 통지일 : 2021.04.13.(화)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1. 위원 성명	한상국	구본민	함병석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10호 안건 2020년도 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실장 성과평가 결과(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11호 안건 2021년도 대표이사 성과평가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12호 안건 2021년도 집행임원 및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감사실장 성과평가 운영(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NH저축은행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로 책임있는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사 및 이사회(위원회) 평가(안)을 2016년 12월 제 13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마련하였고, 매년(연1회) 평가하여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부문은 크게 “역할 및 구성”, “운영의 적정성” 두 부문으로, 평가항목은 각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부문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직무 수행의 충실성, 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위원회 개최횟수의 적정성, 자료의 충실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이사 전원의 설문조사(5점 척도법)로 평가하며, 평점 구간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이사 및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 평가결과는 전부문 A등급으로 우수하게 평가 되었으며, 평가결과는 2021년도 11월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재무지표로는 재무성과(목표이익, 생산성, 시너지), 기업가치(수익성, 건전성, 리스크, 고객지표), 핵심전략(디지털, ESG, 전문성, 정체성, 네트워크), 신뢰도제고(윤리 지수, 중대 공신력 실추 등) 등을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 농협금융 특수성 및 계열사별 중점 추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리더십·인재육성, 대외업무 추진성과 및 사회공헌활동, 농축협 및 중앙회와의 협력관계, 농협금융 중점추진과제(중기전략, 비전2025, 한국판 뉴딜과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의 경우 단기성과지표는 전사 재무성과(수익성, 건전성, 생산성, 자본적정성 지표 등) 및 소관부문 주요성과, 비계량평가로서 종합경영능력 및 중점추진과제 이행 등을 그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성과지표는 당기순이익, 총자산이익률(ROA),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계량평가로서 소관부문 성과지표, 비계량평가로서 종합경영능력 및 중점추진과제 등을 그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의 경우 비계량평가로서 종합경영능력 및 중점추진과제 등을 그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재무성과(수익성, 건전성, 생산성 지표 등) 등의 지표를 활용하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서 해당 임원의 담당 부문 별 소관부문 성과지표 및 비계량부문의 역량 평가 등을 통해 이를 개인 성과보수

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대표이사의 경우,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임원의 경우에는 55%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3년간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 매년 장기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이연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액은 당해연도 평가 시 총 한도를 확정하고 이연보수액에 대해서는 지급미확정으로 운영하며, 미확정 금액은 매년 장기성과평가를 통해 지급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거나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고정보상액으로 운용하고, 임원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보수액은 전액 변동보상액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전액 현금보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NH저축은행은 성과보수액 전액을 현금보상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지배구조법 제22조에 의거 단기성과평가를 통해 당해연도 성과급 총지급한도 결정 및 이연규모를 설정하고, 장기성과평가를 통해 매 이연연도별 이연분의 지급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성과보수액은 전액 변동보상액으로 성과보수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60%는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집행임원의 경우, 성과보수액은 전액 변동보상액으로 성과보수액 중 55%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45%는 3년간 이연지급합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NH저축은행은 2014년 6월 농협금융지주에 편입된 법인으로 조직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NH저축은행은 직원 성과에 따른 변동성과급제도를 시행하여 직원 모두가 성과 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NH저축은행의 임금체계는 직무가치 및 근무평정 등을 감안하여 임금이 결정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대상을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NH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1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NH저축은행은 보수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수 관련 보험을 활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21년 NH저축은행의 보상체계는 전년도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중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 ^{주1)} (A)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주2)} (B)		임직원수 ^{주3)}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20년)	106	221	0.48	146	0.73
당해년도 (2021년)	119	253	0.47	147	0.81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 당해연도가 2021년인 경우 2020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주3) 임직원수(C)는 해당년도 말 재직인원 기준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	비등기	계	3급	4급	5급	계
전년도 (2020년)	인원수	6	6	12	31	39	64	134
	보수총액	4.3	9.5	13.8	32.2	30.6	29.9	92.7
	성과보수액	1.3	3.2	4.5	9.3	6.3	5.9	21.5
당해년도 (2021년)	인원수	6	5	11	34	43	59	136
	보수총액	4.6	8.8	13.4	35.9	35.4	35.1	106.4
	성과보수액	1.4	3.3	4.7	10.1	7.0	6.8	23.9

주1) 3급이하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 포함하여 작성

(3급 : 부장·부부장, 4급 : 차장·과장, 5급 : 대리·계장)

주2) 인원수는 해당년도 말 재직인원 기준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20년)	임원	9	6.5	5.0	2.3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	임원	‘작성 중’ (2022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도 중 6개월 이상 임원으로 근무한 인원 기준(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 상품	기타
전년도 (2020년)	임원	5.0	5.0	-	-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작성 중’ (2022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20년)	임원	6.3	1.9	4.4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작성 중' (2022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 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 으로 구분 기재

주3) 2021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 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2021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0년)	임원	6.3	6.3	-	-	-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작성 중' (2022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업 무담당자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20년)	임원	6.3	2.3	2.2	1.3	0.5	-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작성 중' (2022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21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1년(t기) 발생분, 2020년(t-1기) 발생분, 2019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축소액 ^{주1)}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전년도 (2020년)	임원	-	-	-	6.3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작성 중' (2022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0년)	임원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당해년도 (2021년)	임원	'작성 중' (2022년 5월 15일 공시예정)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1>

정 관

소관부서 : 기획총무부

2011.03.03.제정 2011.03.16.개정 2011.04.21.개정 2011.10.01.개정 2012.02.23.개정
 2012.08.21.개정 2012.09.26.개정 2013.09.30.개정 2013.10.31.개정 2014.06.27.개정
 2015.07.01.개정 2017.01.06.전부개정 2018.12.26.개정 2019.12.31.개정 2020.03.27.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저축은행은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NH SAVINGS BANK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저축은행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자금의 대출업무
5. 어음의 할인업무
6. 내·외국환업무 및 금융결제원업무
7. 보호예수업무
- 7의2.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 7의3.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8.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 8의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9. 부동산임대업무
10.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보증
- 10의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 10의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 10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
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 10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에 한함)

- 11.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3조(영업구역) 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이 저축은행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공고의 방법) 이 저축은행의 공고는 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hsavingsbank.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은행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 및 한국경제 신문에 한다.

제6조(업무방법서) ① 이 저축은행은 상호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업무방법서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② 저축은행이 업무의 종류 및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표준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자본금과 주식

제7조(저축은행의 주식발행 총수) 이 저축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8조(1주의 금액) 이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이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0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저축은행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400,000주로 한다.

제10조의2(주권의 종류) 이 저축은행이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의3(주식등의 전자등록) 이 저축은행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하며, 주식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의2 및 제2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3.27.>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저축은행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저축은행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11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주식 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 또는 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3조(주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상계금지) 이 저축은행의 주주는 주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저축은행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4조(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제16조(주주명부의 효력)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저축은행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료부터 저축은행에 통지한 주소로 한다.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저축은행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저축은행은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저축은행의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이 저축은행은 임시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질권의 등록) ① 이 저축은행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축은행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는 저축은행의 주주명부 및 주권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이미 설정된 질권이나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 또는 전질이나 질권이동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 주식을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 저축은행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을 표시하거나 이를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한다. <신설 2020.03.27.>

제19조(권리자의 신고) ① 주주,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공증에 의한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법정대리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저축은행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03.27.>

제20조(주권의 오손 및 상실과 재교부) ① 주권을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 저축은행에 구주권을 제출하고 신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첨부한 주권의 진위를 감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오손하였을 때에는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상

세한 설명 또는 확실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저축은행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21조(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3. 이사 및 감사위원 임면
4. 자본의 감소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합병
6. 결산 및 저축은행의 재산상 중요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감사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
9.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소집시기) ① 이 저축은행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의2(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3(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의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저축은행은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26>

제22조의4(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의3(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3조의4(의결권 제한) ① 이 저축은행,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저축은행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출석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5(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저축은행은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6(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7(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23조의8(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9(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이사·이사회

제25조(이사의 수) ① 이 저축은행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한다.

제25조의2(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는 제37조의2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제25조의3(사외이사 자격기준) 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

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5조의4(업무집행책임자) ① 이 저축은행은 업무집행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받아 집행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25조의5(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① 이사회는 저축은행의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는 저축은행에서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할 수 없고, 저축은행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하여 9년이상 재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6조의2(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5조에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미달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7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저축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모회사에서 파견된 비상무이사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직무대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결의권한) ① 이 저축은행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주주총회 관련사항】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 1의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2의2.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일반경영 관련사항】

4.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예산(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중요한 차입,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상 고정자산 매입 또는 투자유가증권 매입 등

【조직 및 임원 관련사항】

7. 주요 규정·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8. 상법 제397조 내지 제398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및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9.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 선임 및 해임
 - 9의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9의3. 대주주·임원 등과 이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10.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사항】

11.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결정
12. 자본금 변경, 제준비금 자본전입
13. 자산 재평가

【기타사항】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5.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6.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7. 본점의 이전, 지점(출장소) 설치, 이전 및 폐지
18. 저축은행의 자기주식 취득
19. 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매각
20. 주주총회 위임사항
21.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 보고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 지배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2. 지점(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30조(이사회 의장) ① 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제30조의2(이사회 의장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④ 이사회 소집통지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⑥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5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결의 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2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저축은행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4조(저축은행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써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의2(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저축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저축은행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주주의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 ①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저축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저축은행을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고문) 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6조의2(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5장 이사회내 위원회

제37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내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감사위원회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 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7조의2(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이 저축은행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그 후보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제37조의3(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2/3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② 감사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③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37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
- ⑤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해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맞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맞도록 조치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⑨ 감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⑩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7조의4(리스크관리위원회)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장 회계

제38조(사업연도) 이 저축은행의 매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승인, 공고) ① 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저축은행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이 저축은행이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상법 제447조의4 제2항의 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익금의 처리) ① 이 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1조(이익의 배당) ① 이 저축은행은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적립금의 합계금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금의 액
4.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② 저축은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의2(중간배당) ① 저축은행은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1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의 적립된 법정적립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2조(회계규정) 이 저축은행의 회계처리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가 제정

하는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42조의2(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저축은행에 귀속한다

제42조의3(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7장 보 칙

제43조(법령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정관의 변경) 저축은행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개정된 정관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개정된 정관은 201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개정된 정관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개정된 정관은 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개정된 정관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개정된 정관은 201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개정된 정관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개정된 정관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개정된 정관은 2014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6조(사업연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2017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정관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정관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된 정관은 2020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2>

지배구조내부규범

소관부서 : 기획총무부

2016.10.31.제정 2017.01.06.개정 2017.10.23.개정 2019.06.19.개정 2020.02.26.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가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고경영자”란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말한다.
2. “이사회등”이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3. “임원”이란 이사와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4.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집행임원(이하 “상무대우”를 포함한다),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6.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란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및 지배구조 운영, 회사의 보수체계 의사결정 절차 및 주요 특성, 임직원의 보수액 등에 관하여 매년 작성하여 공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2장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제1절 이사회

제3조(이사회 구성) ① 저축은행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02.26.>

③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외에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의 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④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이사회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저축은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 법령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보고
2.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3.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4.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저축은행의 장기적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대표이사, 다른 이사 또는 이사회내 제위원회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이 이사회소집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결의방법)** ①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 또는 동시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8조(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 저축은행은 이사회 역할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가지표는 이사회 역할 및 구성,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2절 이사회 내 위원회

- 제9조(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다만, 저축은행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감사위원회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위원회를 두어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④ 각 위원회 위원장 선임, 권한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위원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후보를 심사·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시에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1.06.>
- ④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및 자격요건 검증에 관한 사항
 3. 기타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1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준용한다.
- ③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⑤ 감사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2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3조(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각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가지표는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운영의 독립성 및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③ 평가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향후 위원회 운영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임원 및 최고경영자

제1절 이사

제14조(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5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 그 밖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저축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16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저축은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가할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를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내이사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③ 이사는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저축은행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축은행등의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제3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등의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⑥ 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저축은행등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의 선임 및 퇴임) ①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관리중인 후보군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후보군 이외에서 후보를 추천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는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농협중앙회 및 계열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 농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한다.

⑤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만료

2. 사임

3.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이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한 경우

제18조(이사의 임기 및 연임) 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는 저축은행에서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할 수 없고, 저축은행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하여 9년 이상 재직할 수 없다.

② 재임중인 사외이사를 다시 추천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③ 비상임이사와 사내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임중인 비상임이사 및 사내이사를 다시 추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이사에 대한 평가 및 결과활용) ① 이사회는 이사(“대표이사”, “사내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할 및 책임, 참여도 등의 항목을 자기평가, 직원평가, 이사회 참여도 등을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평가결과는 연임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평가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사내이사의 경영성과 등을 기초로 매년 1회 이상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내이사의 평가결과는 연임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성과보수 지급률 결정에 적용된다.

제20조(이사의 보수) ①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 회의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보수는 본 규범 제29조를 따른다.

제21조(이사에 대한 교육) ① 저축은행은 신임 이사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2절 임원

제22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등기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집행임원은 금융회사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 선임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⑥ 임원은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저축은행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퇴임 기준 및 절차) ① 집행임원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되, 지배구조법에 따른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선임한다.

③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만료

2. 사임

3. 인사 관련 규정상 해직 및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5조(임원 유고시 후임자 선임 등) ① 임원의 사임·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집행임원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내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후임자를 선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후임자를 선임한다.

제26조(임원의 임기 및 연임기준) ①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재임중인 업무집행책임자를 다시 선임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한해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재임중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다시 추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06.19.>

제27조(임원 및 부서장 등에 대한 교육) ① 저축은행은 임원 및 부서장 등을 위해 교육 및 연수제도의 일환으로 경영협의회, 각종 포럼 및 경영자 위탁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부서장 등이 제1항의 교육·연수를 이수한 경우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28조(임원에 대한 평가 및 활용) ① 임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성과평가의 방법, 절차, 지표는 임원의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재무적 경영성과 연동하지 않는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③ 성과평가의 결과는 성과보수의 지급, 재선임의 결정 등에 반영한다.

제29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보수, 성과보수 등으로 구성된다.

② 성과보수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하며, 성과보수 중 일부는 3년간 이연지급한다. 이연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3절 최고경영자

제30조(경영승계절차)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은 저축은행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장에서 이하 “임추위”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개정 2017.01.06.>

제31조(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저축은행의 경영승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임추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1.06.>

제32조(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 및 시기)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유는 임기 만료, 사임, 관련 법령상 자격상실, 해임 등 최고경영자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② 경영승계절차 개시시기는 최고경영자 임기만료일 40일 전까지 위원회가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추위에서 개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01.06.>

③ 임추위는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다. <개정 2017.01.06.>

제33조(비상계획)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임추위는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다. <개정 2017.01.06.>

제34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인사담당부서로 한다.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업무 지원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그 밖에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③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임추위에 동조 제2항 각 호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한다. <개정 2017.01.06.>

제35조(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농협금융의 비전을 공유하며 농협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36조(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① 임추위는 최고경영자의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선정하여 후보군을 관리하며,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저축은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

② 임추위는 후보가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6.>

③ 임추위는 지주 임추위에서 추천한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여 대표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6.>

제37조(최고경영자 추천관련 공시) 임추위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개정 2017.01.06.>

1. 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후보자 추천 이유 및 경력
6. 그 밖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8조(최고경영자의 권한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최고경영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주주총회 소집권과 주주총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② 최고경영자는 직무권한의 일부를 직제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위 직책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중장기적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정해야 하며,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최고경영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최고경영자는 임기만료·사임·해임 등의 사유로 퇴임하며,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사 전원에게 사임의 뜻을 전달한다. 또한 해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장 공시

제39조(정기공시) ① 저축은행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부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이사회등이 직전년도에 발생한 변동보상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년도 변동보상은 이를 결의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한다.

③ 삭제 <삭제 2017.10.23.>

제40조(수시공시) ① 저축은행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이 규범을 개정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저축은행은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7영업일 내에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주주의 참석률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제41조(공시방법) 이 규범에 따른 공시는 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5장 기타

제4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상호저축은행법, 지배구조법, 상법 등 지배구조와 관련

된 법률을 말하고, 그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포함한다.),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명에 관한 특례) 이 규범은 제규정관리규정 제3조 제2호에 따른 규정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34조는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범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저축은행의 임원에 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이 규범에 따라 선임된 임원으로 본다.

제5조(감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5항은 이 규범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범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첨부3>

이사회규정

소관부서 : 기획총무부

2011.03.16.제정 2011.06.24.개정 2012.09.26.개정 2012.12.26.개정 2013.02.01.개정
 2013.09.30.개정 2013.10.31.개정 2015.08.01.개정 2016.10.31.개정 2016.12.01.개정
 2017.01.01.개정 2017.06.01.개정 2017.10.23.개정 2019.07.24.개정 2020.02.26.개정
 2020.04.17.개정 2021.09.17.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이사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축은행은 이사회 운영에 관하
 여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이사의 수) ① 이 저축은행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와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하고, 사외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02.26.>

③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사외이사는 제14조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다.

③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
 임한다.

제4조(사외이사의 자격기준) 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 보호 또
 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
 는 자는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

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4조의2(업무집행책임자) ① 이 저축은행은 업무집행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은행의 업무를 분장받아 집행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4조의3(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① 이사회는 저축은행의 필요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는 저축은행에서 사외이사로 6년 이상 재직할 수 없고, 저축은행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하여 9년이상 재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6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2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미달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대표이사등의 선임) ① 이 저축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로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모회사에서 파견된 비상무이사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직무 대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 의 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주주총회 관련사항】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 1의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2의2.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일반경영 관련사항】

4.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예산(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계약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 가. 건당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약
 - 나. 건당 소가가 10억원 초과한 경우, 단, 은행의 고유 업무 및 부수업무에 관련된 소송은 제외한다.
 - 다. 50억원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관한 사항. 단, 저축은행중앙회 일반대출 등 일상 자금조달과 관련한 차입금의 경우 등 직무전결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라. 건당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조직 및 임원 관련사항】

7.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경영협의회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회계규정, 여신심사협의체운영규정,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규정, 내부통제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17.>
8. 상법 제397조 내지 제398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및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9.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 선임 및 해임
- 9의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9의3. 대주주·임원 등과 이 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10.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사항】

11.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결정
12. 자본금 변경, 제준비금 자본전입
13. 자산 재평가

【기타사항】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5. <삭제> <삭제 2017.06.01.>

16.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7. 본점의 이전, 지점(출장소) 설치, 이전 및 폐지
 18. 저축은행의 자기주식 취득
 19. 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매각
 20. 주주총회 위임사항
 - 20의2. M&A·P&A, 신사업 진출 및 대규모 투자 등 중요 경영사항
 - 20의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 20의4. 이사가 분담할 직무의 범위
 - 20의5. 명의 개서 대리인의 지정
 - 20의6.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련한 사항
 - 20의7.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 절차상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 20의8. 관계회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20의9. 기타 이사회내 위원회, 경영협의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결의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 및 심의사항
 3. 종합적인 경영분석 보고
 4.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5. 기타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협의회 또는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한다.
1. 지배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2. 지점(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개정된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약관을 제·개정할 경우

제10조(이사회 의장) ① 이 저축은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회가 이에 관해 정한 바 없으면 선임사외이사, 최초 이사선임일자 순으로, 위 선임일자가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 ④ 이사회 소집통지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⑥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5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제12조(이사회 의 결의 방법)** ① 이사회 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13조(이사회 의 의사록)** 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회)** ① 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내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감사위원회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 ② 제1항의 각호의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각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 ④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준용한다.
- ⑤ 위원회는 각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결과를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통지를 받은 각 이사 및 위원회에 참석한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5조(저축은행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에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회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③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저축은행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써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이사의 권한)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저축은행 업무에 대한 사항의 질문, 정보의 제공 요구 및 의견의 제시
 2.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요청
-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중대한 기밀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저축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저축은행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주주의 유지 청구권 및 대표소송) ① 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

한 행위를 하여 저축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저축은행을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 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고문) 이 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약간 명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22조(감사위원회 보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경영협의회의 운영) 경영협의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또는 일상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을 제외한 사내이사와 집행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4조(긴급사항) ①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경영협의회의 결의로 사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시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4조 및 제5조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 제3항, 제3조 제2항, 제4조의2, 제4조의3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의2호 내지 제9의3호, 제14조 제1항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4>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소관부서 : 기획총무부

2016.10.31.제정 2017.01.06.개정 2017.10.23.개정 2019.07.24.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엔에이치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대한 후보자를 심사·선정하여 추천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은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선임 시부터 이사 임기만료 시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회가 이에 관해 정한 바 없으면 최초 이사선임일자 순으로, 위 선임일자가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7.24.>

제5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최초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등을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표이사·사외이사 후보군관리에 관한 사항
2.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시에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1.06.>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통지받은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8조(경영승계계획) 대표이사 경영승계계획은 경영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지주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지주 임추위”라 한다)에서 수립한 경영승계계획에 따른다.

제9조(추천절차 및 자격검증) ① 위원회는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저축은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후보가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지주 임추위에서 추천한 후보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여 대표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관리중인 후보군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10.23.>
- ⑤ 위원회는 현재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였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3.>

제10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경과, 결과, 반대하는 구성원과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부서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지원부서는 경영기획부서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경영기획담당 부서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지원부서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와 위원회 운영 지원을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준비행위) 위원회의 운영·구성 등을 위한 준비는 정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5>

감사위원회규정

소관부서 : 감사실

2011.3.16.제정 2011.6.24.개정 2015.7.1.개정 2016.10.31.개정 2017.2.17.개정
2018.4.18.개정 2018.12.18.개정 2019.4.18.개정 2021.5.26.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저축은행” 이라 한다)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부실채권에 대한 부실책임여부 결정<신설 2018.4.18.>
8.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9.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저축은행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구성

제7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2/3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6.10.31.>

②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개정 2016.10.31.>

③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개정 2016.10.31.>

④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맞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맞도록 조치한다.<개정 2016.10.31.>

⑤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5.26.>

⑥ 대표이사는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1.5.26>

제8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회가 이에 관해 정한 바 없으면 최초 이사선임일자 순으로 하며, 선임일자가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8.>

제9조(위원회의 권한위임) ① 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근감사위원(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내부감사책임자를 말한

- 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개정 2021.5.26>
- ② 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간사 또는 감사 부서 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는다.
- ③ 일상감사사항 등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위원에 위임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 위원회에서 보고한다. <개정 2021.5.26>
- ④ 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 위원이 공람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당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소집절차)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4.18.>
 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결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마.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감사계획의 수립
 -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 다.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라. 외부감사인의 선임의 승인
 -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사항
 - 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저축은행이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사항
 - 사.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아.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자. 감사규정, 감사관련 세칙 및 지침의 제정과 개폐(다만, 법령, 표준규정 등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나 자구수정은 제외)<신설 2018.4.18.>
- 4. 기타
 -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감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31.>

②심의사항

- 1. 감사에 관한 사항
 -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나. 저축은행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 라. 저축은행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 마.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 바.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
 - 사.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 아.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 자.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신설 2018.4.18.>
- 카. 부실채권에 대한 부실책임심사<신설 2018.4.18.>
- 2. 기타
 -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관계인의 출석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15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6조(권한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과 여신심사위원회 부의 안건 중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동일인여신한도 준수사항, 출자자와 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취급과 관련된 안건은 반드시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6>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은 감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18.4.18.>

제17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상근감사위원은 전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이외에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위원회는 적어도 매분기 1회 이상 저축은행 내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8>

1. 부서별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
2. 사업부서별 영업계획·전략 수립 프로세스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3. 영업상 회계시스템 및 기준 변경 등의 준법성 및 적정성 여부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부서별 업무 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
7.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조직구조상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제17조의3(감사결과 처리) ①위원회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8.4.18.>

1.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2.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주의, 문책 또는 변상

제18조(보고) ①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감사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8.>

제5장 보칙

제19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보조조직)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단위의 보조조직을 두며, 감사부서를 위원회의 보조조직으로 한다.<개정 2018.4.18.>
 ②감사부서에는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적정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8.>

제21조(감사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4.18.>

1. 감사인의 의무를 위배한 자
2. 감사인의 권한에 의한 감사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3. 긴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태만한 자

제2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신설 2018.4.18.>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는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 임기의 적용례) 제7조 제5항은 이 규정 시행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감사위원부터 적용한다.

<첨부6>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소관부서 : 리스크관리부

2019.07.24.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위원회는 리스크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회가 이에 관해 정한 바 없으면 최초 이사선임일자 순으로, 위 선임일자가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위험성향)의 결정
3. 적정 익스포저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위험자본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리스크관리규정 및 리스크관리 관련 세칙의 제정 및 개정
 7.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8.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신규 신용평가모형 도입 및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산, 영업양도 및 병합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건당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의 출자
 3. 50억원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관한 사항
- ③ 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스크관리 현황 및 한도관리 현황
 2.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 현황
 3.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4. 기타 지주회사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 또는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내용,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감독기관 제출 등 사정상 긴급하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관계인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리스크관리부서장이 담당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리스크관리협의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리스크관

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실무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법령 및 내규의 개정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리스크관리부서장이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